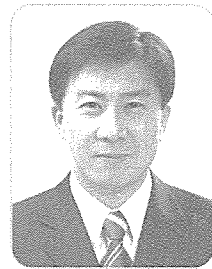


〈특 집 : 도서관과 한미 FTA〉

도서관 분야 한미 FTA 영향 분석



심 원 식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wonsikshim@skku.edu

1. 서론

국제적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 즉 FTA(free trade agreement)이다.

그러나 시장 자유화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가 대거 투입되면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의 결과는 다른 어떠한 협정보다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협상 안건이나 협상 타결 후 여파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미 FTA의 체결이 도서관 서비스와 운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한미 FTA 협정 전반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

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문서의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 및 종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수렴을 통하지 않고 자료의 분석만으로 이끌어낸 결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전체 도서관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2. 국내 도서관 현황

〈표 1〉 도서관 현황 통계¹⁾

년도	도서관 수(개소)	직원 수(명)	연 이용자 수(명)	예산액(천원)
2003	10,543	14,265	205,005,363	640,198,566
2004	11,104	15,144	235,098,233	743,639,440
2005	11,793	15,711	262,580,660	733,554,363

우리나라의 도서관 서비스는 〈표 1〉이 보여주듯 도서관 수가 약 만 이천여 개소에 달하며, 연간 이용자 수도 2억 6천만 명, 총 예산액 7300억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 서비스의 양과 품질은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평생 학습 및 여가 선용에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작은 요소라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한미 FTA 협상이 도서관 서비스 분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판단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현재 한미 FTA 협정에는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분야를 의제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양허/유보)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

3. 도서관 서비스 분야

FTA의 근본적인 내용은 체결 대상국 간의 확대된 시장 접근(market access)과 비차별적인 처우(non-discriminatory treatment)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도서관

1) 『한국도서관연감』

서비스 영역에서 미국 기업이나 단체는 한국인 기업이나 단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서관 서비스 자체는 공공적 자원의 성격을 띠므로 대부분 직접적인 수입원이 없으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여타 분야와는 달리 외국 도서관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건립 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그린벨트 등)에서 박물관과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로 허가를 받아 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도서관 서비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 상대 국가에서 협정으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에 체결된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199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이 체결이 세 개 나라의 도서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보고는 없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미 FTA가 국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NAFTA가 해당 당사국의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보다 적으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론이 FTA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도서관 혹은 기업의 직접적인 국내 도서관 진입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간접적인 경로로의 진입은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가 개방될 경우, 교육 서비스의 부수적 차원에서 도서관 서비스가 연계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외국계 도서관이 국내에 진입할 경우 기존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및 목록이나 분류 체계 등의 호환 가능성 여부는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인적 자원

FTA가 타결될 경우 일반적으로 체결 당사국 간에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도서관 사서직 종사자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국적 구분을 통한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는 미국에서의 사서자격증을 국내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 1항에서 명기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라는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차별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되어 내국민 대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인력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간호사나 회계사, 변호사와 같이 상당 부분 표준화되고 국제화된 업무의 경우에 한해서 FTA 협상을 통해 개방된 인력시장을 노린 전문직 종사자의 이동이 가능하다. 반면 도서관 사서와 같은 문화적 특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 사서들의 미국 진출이나 미국 사서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법률적 장벽이 완화된다고 해서 실제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FTA 체결이 국내 사서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만들고 직간접적인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류가 문헌정보학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일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국제화에 선도적으로 적응하는 몇몇 대학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5.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한미 FTA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협상 사안중의 하나이며, 도서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제작된 것이 포함된 만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외국 자료의 경우 크게 ‘공급자(Vendor)와의 계약’ 과 ‘도서관 면책특권’ 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자료의 획득은 공급자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자료의 활용은 공공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도서관 면책특권의 보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인쇄 자료의 저작권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인쇄 자료는 대다수 권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서관 면책특권이 그러한 공적 이용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강화는 디지털도서관으로의 확장에서는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도 도서관이 소장된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하여 도서관 내에서 혹은 도서관간에 디지털화된 자료를 전송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디지털도서관의 자료 이용이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 「저작권법」 제28조 2~6항은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디지털화된 자료를 복제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할 때 일정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범위를 벗어난 이용을 막기 위하여 도서관이 기술적 보호장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USTR(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도서관 분야에서 제기될 것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사안이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크게 ‘권리자에게 30일간의 통지기간을 둘 것’과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면책조항은 어문저작물에만 적용하고 방송물, 실연, 음반은 제외시킬 것’이다.²⁾

이 사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인쇄 자료의 디지털화나 희소성이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복사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일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 사용자들의 편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절충안과 타협점을 찾을 필요성이 보인다. 또한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양국 도서관의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정보 제공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 도서관계가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번 한미 양국간 FTA 협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계나 유관기관 등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나 협회, 혹은 정부 기관 주도로 행해진 도서관

2) 한미 FTA 지적재산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2006. ‘한미자유무역협정 중 지적재산권 및 분쟁절차에 대한 의견서’

분야의 FTA 관련 연구나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공청회 등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혹 있다 하더라도 심층적인 분석이 아닌 간단한 이슈 리포트 수준이 전부이다. 여기에 정부의 FTA 관련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도서관계의 합리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비록 우리나라 도서관 관련법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한 등록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도서관 설립이나 사서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협상 결과에 의한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서관 서비스 자체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심도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FTA의 일반적인 결과가 기업 활동의 촉진이며 이는 법인세의 인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FTA는 해당 국가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능력을 저해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FTA는 해당 국가들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장기적으로 저해한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한편 한미 FTA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세에 근거 삼고 있는 대다수의 미국 공공도서관 예산구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입구조에 장기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이루어진 각국 협상 후의 도서관 분야 변화 사례를 볼 때,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변화가 급작스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행해진 FTA 협정이 해당 국가도서관의 구성과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나 데이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국내 도서관 관련법 및 미국과 FTA협약에서의 도서관 관련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 관련 정보들이 적절한 수단과 경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도서관계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대응해야 하겠다. 